



규정

자랑스런 동원인상 규정


문서번호	TWP-A514
제정일자	2023. 05. 03.
개정일자	
개정번호	페이지 1/4

목 차

부칙

작성부서	교무학생처	제정일자	2023. 05. 03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승 인
직 책	담 당		사무처장	기획예산처장		총 장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A514	
		제정일자	2023. 05. 03.	
	자랑스런 동원인상 규정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페이지	3/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‘우리대학’이라 한다)의 명예를 빛내거나 우리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(이하 ‘자랑스런 동원인’이라 한다)에게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상자의 자격)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랑스런 동원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.

1. 정원내·외 졸업자
2.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과정 졸업자 또는 이수자

제3조(추천권자)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.

1. 부서장
2. 평생교육원장, 대외협력실장
3. 총동문회장

제4조(추천서류) ①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
2. 피추천자의 이력서 1부

② 사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, 접수된 서류는 공개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수상자 선정) ① 수상자 선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
② 수상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, 선정 과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접수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포상) 자랑스런 동원인상은 상장과 같이 상패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7조(주관부서) 이 상에 관한 제반 업무는 교무학생처에서 담당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A514
		제정일자	2023. 05. 03.
	자랑스런 동원인상 규정	개정일자	
		개정번호	페이지

[별지 제1호 서식]

추천서

성명	
생년월일	
소속 및 직위	
주소	
연락처	
추천내용	
<p>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천자 (인/서명)</p>	